

1. 개정이유

준해양사고의 통보 대상에 인명·항만시설 사례 등을 추가하고, 준해양사고 통보서의 작성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해양사고 범위의 보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인명피해나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을 가까스로 피한 사태와 손상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한 경우 등을 추가
- 개정안으로 준해양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현행 ‘기타 준해양사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조항은 삭제

나. 준해양사고 통보서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 준해양사고 종류(9종→13종) 및 기상상태(4종→5종) 항목을 세분화
- 발생 추정원인(16종) 및 작업유형(21종)을 작성대상으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협의 예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또는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해양사고 통보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통보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명)		회사명 (해당시)	
	연락처		전자우편	
준해양사고명				
준해양사고 종류	☐ 충돌 ☐ 접촉 ☐ 좌초 ☐ 침몰 ☐ 전복 ☐ 화재 ☐ 폭발 ☐ 해양오염 ☐ 인명사고 ☐ 선체손상 ☐ 기관손상 ☐ 화물손상 ☐ 그 밖의 준해양사고			
발생작업 유형	☐ 계류/투묘작업 ☐ 화물/화물창 작업 ☐ 갑판기기 정비 ☐ 도선사 승하선 작업 ☐ 밀폐구역 작업 ☐ 고소/현외작업 ☐ 용접/화기작업 ☐ 위험물 작업 ☐ 중량물 작업 ☐ 기관정비 ☐ 보조기기 정비 ☐ 기관실 작업 ☐ 급유작업 ☐ 구명설비 점검 ☐ 항해/무선설비 점검 ☐ 전기설비 점검 ☐ 비상기기 점검 ☐ 항해/기관당직 ☐ 조리작업 ☐ 승선중 일상생활 ☐ 그 밖의 작업			
발생 추정원인 (2개)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 점검/정비소홀 ☐ 안전수칙/규정 위반 ☐ 작업환경 불량 ☐ 기기/설비결함 ☐ 화물적재/관리 불량 ☐ 선체구조적 결함 ☐ 근무태만 ☐ 조작실수 ☐ 판단착오 ☐ 망각/기억실패 ☐ 의사소통 실패 ☐ 관리/감독 부적절 ☐ 피로 ☐ 기상악화 ☐ 그밖의 원인			
선종	☐ 일반화물선 ☐ 벌크선 ☐ 컨테이너선 ☐ 자동차운반선 ☐ 여객선(카페리선/화객선 등) ☐ 유조선 ☐ 액화가스운반선 ☐ 케미컬운반선 ☐ 예선 ☐ 부선 ☐ 그 밖의 선박			
선박상태	☐ 항해 중 ☐ 정박(투묘) 중 ☐ 계류 중	선내 발생장소		
발생일시			지리적 위치	
기상상태	☐ 맑음 ☐ 비 ☐ 안개 ☐ 거친 날씨 ☐ 기타()		바람방향/세기	/ 노트
해상상태	시정	마일	파고/조류	미터 / 노트
준해양사고 개요				
개선할 사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작성 방법

1. “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법 제2조제1의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참조)을 말하며, 그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충돌: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과 관계 없이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 나. 접촉: 다른 선박이나 해저는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
 - 다. 좌초: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 또는 간출암(썰물 때만 드러나는 바위)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 라. 침몰: 거친 날씨 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구멍,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마. 전복: 선박이 뒤집혀진 것(충돌·접촉 등 다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해당 사고로 분류)
 - 바. 화재: 불로 인하여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
 - 사. 폭발: 급속한 연소로 인한 급격한 팽창이나 파열 등이 발생한 것.
 - 아. 해양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
 - 자. 인명사고: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것(예: 추락, 실족, 타격 등에 의한 인명피해)
 - 차. 기관손상: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보일러·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윤활유·공기·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2. “발생작업 유형”은 해당 준해양사고 발생 당시 진행되었던 작업과 가장 가까운 작업유형을 선택한다.
3. “발생 추정원인”은 해당 준해양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을 선택한다.(2개)
4. “선박상태”는 「해사안전법」 제2조제2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정의에 따라 적는다.
5. “선내 발생장소”는 조타실, 기관실, 갑판 등 구체적인 장소를 적는다.
6. “지리적 위치”는 위도·경도 또는 항구명을 적는다.
7. “준해양사고 개요”는 해당 준해양사고 상황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자, 장소, 시기, 위험발생 요인과 위험상황의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8. “개선할 사항”은 잠재적 손실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준해양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준해양사고)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태와 유사한 사태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u>	7. <u>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또는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u>
<u><신 설></u>	8.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태</u>